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3 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6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36인으로 한다. 시설 입소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수급자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요보호 노인 발생 시 등은 장흥군수의 승인을 받아 우선 일시보호하고 필요한 추후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장기외박 대상자로 인하여 특례(정원의 5%)인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시설 홈페이지(www.jncsw.org/southcenter)를 통한 안내모집
2. 시·군·구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추천(TEL : 061-860-5871 장흥군 노인복지담당)
3. 시설 직원 및 지역 방문요양보호사의 개별적 안내모집
4. 시설 내·외 프로그램 참여 보호자(후원자, 자원봉사자 포함)등을 통한 소식지, 리플렛 배포로 장기요양급여 안내 및 모집활동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66조(계약 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향상 및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함이다.

③ 본 시설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으로 월 이용료는 고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되며 기타 비용부담액의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비위관 영양 공급자 등)등은 이용일수(횟수)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부담한다. 단,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 및 개인적 물품 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입소 비용 부담률 : (별지 제16호)

2. 이용료 수납 등 :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5일 안에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연락이 되지 않고 4개월이 지나도 미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다만, 연락이 되며 왕래가 있는 보호자는 문자나 유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67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권리·의무, 수급자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수급자의 보호자)과 서비스 제공자, 수급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요청할 권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시설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권리
6.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할 의무
7. 수급자가 본 시설의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파손에 대한 책임의무
8.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9.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10.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채무 발생 시 변제의 책임의무
11.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2.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압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3.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의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급여제명 중 알게 된 '수급자' 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7. 입소(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9.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10. 미납 본인부담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시설에서 시설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3.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4.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5.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6.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7.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8.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9.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지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1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11.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12.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3.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4.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금주의 의무
15. 시설물 사용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할 의무
16.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7.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18.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9.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0.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④ 수급자 학대 예방

1. 종사자와 수급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학대예방과 해결을 위한 방안
 - 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명문화하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나.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강사(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설장 등)를 초빙하여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수급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라.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헐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바.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사.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아. 시설 내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및 수급자학대 유형 자료 비치, 학대관련 포스터 게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

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별지 제7호)로 한다.
4.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68조(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연락이 되지 않고 이용료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입소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⑥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제169조(퇴소) ① 수급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시설의 소정의 퇴소신청서(별지 제23호)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고 서비스제공자는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6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후 서비스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7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3등급→2등급, 2등급→3등급 등)
 - 수급자의 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한 경우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수가(별지 제16호)에 맞추어 수급자 가정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자격(본인입소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일반-경감, 경감-기초수급자 등)
 - 수급자의 자격이 일반에서 기타경감, 경감에서 일반으로 변경 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맞추어 표준약관을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하고,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수급자로 변경 될 경우
엔 장흥군에 이용신청 접수하여 이용시설이 결정 될 때 표준약관을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로 인한 수가 변경수가에 맞추어 표준약관을 통해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제 6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1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씻기
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관절 구축예방, 투약관리, 감염간호, 치매 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협약의료기관 의뢰 및 계약의사 진료보조, 인지훈련 등), 간호관리
(욕창·영양·비위관·통증·배설관리, 방광·회음부·요루·장루·배설간호, 당뇨발관리,
호흡기 간호, 산소요법,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응급서비스(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
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등
 3. 기능회복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
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4. 시설환경관리 : 침구·린넨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
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일상회화, 응급벨 대처,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
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등)
- 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감경(별지 제16호)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나.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역·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25%이하, 25%초과~50%이하인 자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3. 비급여 항목 : 비용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가.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별지 제16호)에 따른다.
나. 상급침실 이용료에 따른 추가비용: 1일 10,000원
다. 이미용 비용 : 자원봉사자 활용
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2항의 3조 가,나, 다 항목이며, 그 밖의 비용은 시
설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는 불가하다

바.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
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수납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보호자)의 형편에 따라 현금수납 등도 가능하다.

제 7 장 특별보호

제172조(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
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감염병 환자 및 의심되는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기준
 1.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계약의사, 보
호자, 직종별 담당자와 협의 하에 특별침실로 모실 수 있다.
 2. 특별침실 사용기간은 확진 또는 의심 수급자가 완치 또는 병원 전원시까지로 하나,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계약의사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②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기준
 1.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준수하고 위험한 물건은 제거한다.
 2.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수급자가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임종을 맞이하거나 임종하여 특별조치가 필요한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기준
 1. 임종에 참관하는 종사자, 보호자는 반드시 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종간호 제공 시 수급자가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혼자 두지 않고
원하는 종교의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임종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안내 한다.
- ④ 기타 수급자 본인 요구 및 질환의 특성에 따른 특별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잤은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정신질환 등으로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예: 소리 지름, 큰소리로 욕설, 폭력행동 등)
수급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73조(특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임종간호 시 특별의료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급자나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 ② 특별침실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 하지 않는다.

제174조(특별침실 사용) 시설의 특별침실 사용에 관하여 특별침실 사용수칙에 따른다.

제 8 장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제175조(의료로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의사의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계약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의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세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계약의사 진료비용은 는 장기요양이용료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연락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 시 필요시에 따라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 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 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계약의사가 판단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9 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제176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의 수급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장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수급자의 양해를 얻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수급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수급자는 부탄가스, 라이터, 인화·발화물질, 폭발성 물질 등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4. 수급자는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그 침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수급자는 침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7. 침대이용: 침실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8. 화장실, 목욕실 사용: 미끄럼주의와 서비스제공 종사자와 동행하여 사용한다.
9. 엘리베이터 탑승: 탑승 시 “반드시” 서비스제공 종사자와 동행하여 사용한다.
10. 흡연구역 외의 장소(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② 시설장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시설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시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2. 시설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장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장흥군수는 제2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이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4. 시설장은 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보일러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법 및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시 즉시 개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 10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7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업무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이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 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특이질환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하였을 경우

제178조(임종 및 장례) 수급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 분하여 행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장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6호>

(2025년 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	60% 감경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급여	20%	12%	8%	면제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입소 (30일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노인요양시설 일반 20%	1일당: 90,450 총 액: 2,713,500원 공단부담금(80%): 2,170,800원 본인부담금(20%): 542,700원	1일당: 83,910원 총 액: 2,517,300원 공단부담금(80%): 2,013,840원 본인부담금(20%): 503,460원	1일당: 79,240원 총 액: 2,377,200원 공단부담금(80%): 1,901,760원 본인부담금(20%): 475,440원
비급여 (식재료비)	2,800(1식) x 3회 = 8,400(1일) x 30일 =252,000원 비위관식 실비		
본인부담금 총액 (일반 20%식재료비)	794,700원	755,460원	727,440원
노인요양시설 경감 12%	1일당: 90,450 총 액: 2,713,500원 공단부담금(88%): 2,387,880원 본인부담금(12%): 325,620원	1일당: 83,910원 총 액: 2,517,300원 공단부담금(88%): 2,215,224원 본인부담금(12%): 302,076원	1일당: 79,240원 총 액: 2,377,200원 공단부담금(88%): 2,091,936원 본인부담금(12%): 285,264원
비급여 (식재료비)	2,800(1식) x 3회 = 8,400(1일) x 30일 =252,000원 비위관식 실비		
본인부담금 총액 (경감 12%식재료비)	577,620원	554,076원	537,264원
노인요양시설 경감 8%	1일당: 90,450 총 액: 2,713,500원 공단부담금(92%): 2,496,420원 본인부담금(8%): 217,080원	1일당: 83,910원 총 액: 2,517,300원 공단부담금(92%): 2,315,916원 본인부담금(8%): 201,384원	1일당: 79,240원 총 액: 2,377,200원 공단부담금(92%): 2,187,024원 본인부담금(8%): 190,176원
비급여 (식재료비)	2,800(1식) x 3회 = 8,400(1일) x 30일 =252,000원 비위관식 실비		
본인부담금 총액 (경감 8%식재료비)	469,080원	453,384원	442,176원